

「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11월 18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포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4조제2항제5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(2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

의회의장(참조: 문교사회전문위원, 전화 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·구지회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
설한다.

5.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 및 용도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5.</u>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제4조(지원대상 및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6.</u> (현행과 같음)